



피해자의 권리장전 마시법(Marsy's Law)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조 28항은 범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공정성과 존중심**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정성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를 받고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과정의 전체 과정에서 협박, 괴롭힘 및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 피고로부터의 보호**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보석금과 석방 조건 결정 시 피해자의 안전 고려**
피고의 보석 금액 및 석방 조건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 비밀 정보 공개 방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병원 치료 또는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비밀 대화를 공개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를 받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 정보나 기록을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 피고 변호사의 면담 거절**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면담, 선서 증언 또는 강제 발표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면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정할 권리.
- 기소 기관과의 협의 및 재판 전 처분 통지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체포(기소자가 알고 있는 경우), 기소된 혐의, 피고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고 기소 기관과 적절하게 협의할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처분을 하기 전에 통지와 정보를 받을 권리.
- 공적 절차에 대한 통지 및 출석**
피고와 기소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공적 절차(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모든 가석방 또는 다른 유죄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 법적 절차에 대한 출석 및 의견 제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법적 절차(체포 후 석방 결정, 진술, 선고, 유죄판결 후 석방 결정과 관련된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피해자의 권리장전 마시법(Marsy's Law)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조 28항은 범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공정성과 존중심**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정성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를 받고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과정의 전체 과정에서 협박, 괴롭힘 및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 피고로부터의 보호**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보석금과 석방 조건 결정 시 피해자의 안전 고려**
피고의 보석 금액 및 석방 조건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 비밀 정보 공개 방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병원 치료 또는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비밀 대화를 공개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를 받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 정보나 기록을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 피고 변호사의 면담 거절**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면담, 선서 증언 또는 강제 발표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면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정할 권리.
- 기소 기관과의 협의 및 재판 전 처분 통지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체포(기소자가 알고 있는 경우), 기소된 혐의, 피고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고 기소 기관과 적절하게 협의할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처분을 하기 전에 통지와 정보를 받을 권리.
- 공적 절차에 대한 통지 및 출석**
피고와 기소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공적 절차(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모든 가석방 또는 다른 유죄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 법적 절차에 대한 출석 및 의견 제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법적 절차(체포 후 석방 결정, 진술, 선고, 유죄판결 후 석방 결정과 관련된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피해자의 권리장전 마시법(Marsy's Law)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조 28항은 범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공정성과 존중심**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정성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를 받고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과정의 전체 과정에서 협박, 괴롭힘 및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 피고로부터의 보호**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보석금과 석방 조건 결정 시 피해자의 안전 고려**
피고의 보석 금액 및 석방 조건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 비밀 정보 공개 방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병원 치료 또는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비밀 대화를 공개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를 받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 정보나 기록을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 피고 변호사의 면담 거절**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면담, 선서 증언 또는 강제 발표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면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정할 권리.
- 기소 기관과의 협의 및 재판 전 처분 통지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체포(기소자가 알고 있는 경우), 기소된 혐의, 피고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고 기소 기관과 적절하게 협의할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처분을 하기 전에 통지와 정보를 받을 권리.
- 공적 절차에 대한 통지 및 출석**
피고와 기소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공적 절차(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모든 가석방 또는 다른 유죄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 법적 절차에 대한 출석 및 의견 제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법적 절차(체포 후 석방 결정, 진술, 선고, 유죄판결 후 석방 결정과 관련된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9.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판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최종 판결 및 사건과 관련된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10. 집행유예국에 대한 정보 제공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유예국 담당관에게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11. 선고 전 보고서의 수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에게 선고 전 보고서를 제공할 때 이 보고서를 받을 권리(법에 의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부분은 제외).

12. 유죄 판결, 선고, 수감, 석방, 도주에 대한 정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시간, 또는 피고에 대한 다른 처분, 피고의 석방 예정일, 피고가 수감으로부터 석방 또는 도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13. 손해배상

- A. 범죄 행위의 결과로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확보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명백한 의도이다.
- B. 범죄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에서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이나 처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 C.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전적 지불금, 금전 및 재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4. 재산의 신속한 반환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권리.

15. 가석방 절차 및 가석방에 대한 통지

모든 가석방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가석방 과정에 참여하고, 가석방 당국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다른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16. 가석방 시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안전 고려

가석방 또는 다른 판결 후 석방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17. 이 16개 항의 권리에 대한 정보

(1)에서 (16)목까지 열거된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마시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무부장관 웹사이트 www.ag.ca.gov/victim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가까운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려면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9.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판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최종 판결 및 사건과 관련된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10. 집행유예국에 대한 정보 제공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유예국 담당관에게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11. 선고 전 보고서의 수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에게 선고 전 보고서를 제공할 때 이 보고서를 받을 권리(법에 의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부분은 제외).

12. 유죄 판결, 선고, 수감, 석방, 도주에 대한 정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시간, 또는 피고에 대한 다른 처분, 피고의 석방 예정일, 피고가 수감으로부터 석방 또는 도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13. 손해배상

- A.범죄 행위의 결과로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확보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명백한 의도이다.
- B. 범죄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에서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이나 처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 C.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전적 지불금, 금전 및 재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4. 재산의 신속한 반환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권리.

15. 가석방 절차 및 가석방에 대한 통지

모든 가석방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가석방 과정에 참여하고, 가석방 당국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다른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16. 가석방 시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안전 고려

가석방 또는 다른 판결 후 석방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17. 이 16개 항의 권리에 대한 정보

(1)에서 (16)목까지 열거된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마시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무부장관 웹사이트 www.ag.ca.gov/victim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가까운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려면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9.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판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최종 판결 및 사건과 관련된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10. 집행유예국에 대한 정보 제공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유예국 담당관에게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11. 선고 전 보고서의 수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에게 선고 전 보고서를 제공할 때 이 보고서를 받을 권리(법에 의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부분은 제외).

12. 유죄 판결, 선고, 수감, 석방, 도주에 대한 정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시간, 또는 피고에 대한 다른 처분, 피고의 석방 예정일, 피고가 수감으로부터 석방 또는 도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13. 손해배상

- A.범죄 행위의 결과로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확보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명백한 의도이다.
- B. 범죄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에서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이나 처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 C.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전적 지불금, 금전 및 재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4. 재산의 신속한 반환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권리.

15. 가석방 절차 및 가석방에 대한 통지

모든 가석방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가석방 과정에 참여하고, 가석방 당국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다른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16. 가석방 시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안전 고려

가석방 또는 다른 판결 후 석방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17. 이 16개 항의 권리에 대한 정보

(1)에서 (16)목까지 열거된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마시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무부장관 웹사이트 www.ag.ca.gov/victim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가까운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려면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